



송파구의회
Songpa District Council

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심사보고서

의안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의안번호	제11호
심사일자	2026. 08. 27. (목)



위원장 최 옥 주

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제11호
------	------

2026년 08월 27일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08. 14. 최상진·손병화 의원
(최상진 의원 대표발의)
- 나. 회부일자 : 2026. 08. 18.
- 다. 상정일자 : 2026. 08. 27. 제33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 설명의 요지 (최상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위생업소 및 단체를 지원 및 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,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2)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함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3)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을 명시함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4) 지도·감독과 준용을 명시함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법」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
- 2) 합 의: 관계부서 합의 완료(보건위생과)
- 3)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강혜진)

- 최근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,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, 제과점을 비롯한 각종 식품 업종과 숙박업, 이·미용업 등에 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.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은 청결과 안전이 최우선의 선택 기준이 됨에 따라, 시설의 위생과 청결한 환경은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업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- **안 제2조**에서 “위생업소”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및 「공중위생단체」를 「식품위생법」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3조**에서는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임. 현재 송파구 내 식품위생업소는 13,687개소가 있으며, 공중위생업소는 3,052개소가 있음. 위생단체는 총 14개 단체가 있음. 그러나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단체로 지원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 한다면,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단체로는 총 6개 단체가 적용됨. 이에, 단체명이 “송파구지회”인 일부 송파지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원받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.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**안 제4조**에서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,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, 위생단체의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사업, 그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5조**에서는 지원 사업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 이는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, 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**안 제6조**에서는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으로 영업정지,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,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거나 건물소유주자로부터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, 관련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 확인 시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사항임.
- **안 제7조**에서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.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도·점검을 통해 사업이 더욱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.
- **안 제8조**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정함.
- 본 조례안은 송파구 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됨. 특히, 위생업소의 시설개선, 컨설팅 및 교육, 음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

통해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다만, 현행 안 제3조의 경우 일부 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전반으로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실효성 있는 재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

【 질의 : 위정희 위원 】

- 답변 : 최상진 의원

- 안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 시, 업소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?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,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
- 현재 각종 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기보다는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시 통합을 권고하고 있음. 이에 현재 설치·운영 중인 기금관리위원회 또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안 제5조제2항을 근거로 방침·규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.

【 질의 : 김성호·박지선 위원 】

- 답변 : 최상진 의원, 박정훈 보건위생과장

- 본 조례에서 위생단체를 포함한 사유는 무엇이며, 위생단체를 지원하는 절차는?
- 송파구 위생단체 중 현재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는 1곳으로 한국외식업 중앙회 송파구지회가 있음. 조례 시행에 따라 위생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당장 예산 지원은 불가하며,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함.

【 질의 :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 】

- 답변 : 최상진 의원, 박정훈 보건위생과장

- 위생단체의 경우, 각 업종에 따른 이익단체로 보여지는데, 안 제4조제4호에서 위생단체의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?
- 안 제4조제4호에서 위생단체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순수한 자원봉사라는 목적 외 부차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임.
- 서울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이 본 조례의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?
- 현 조례 시행 시 보조금 지원은 기금관리위원회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6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 이유

- 지원 사업 중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수정 주요 내용

- 위생단체의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(안 제4조 제4호 삭제)